

삼척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95. . .

제출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삼척시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6조 1항)
-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안 제7조 1항)
-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안 제8조 1항)
-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 61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58세로 한다
(안 제16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 : 별첨

삼척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 ①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의자녀와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의 자녀

② 제1항의 순위로 입소자를 선정하되, 각 호내에서는 입소신청순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 (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탁운영

- 제6조 (위탁운영관리자)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자를 "수탁자"라한다 이하같다)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 (")
 3.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4. 이력서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 및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수 있다.
- 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위탁운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되되, 그 기간은 당초의 위탁운영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기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민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4. 법률 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12조 (시설물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멀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일어야 한다.

제 3 장 종사자 관리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후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종사자의 정년)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 61 세

2. 보육교사 : 58 세

3. 기타 종사자 : 58 세

②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7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보) 시장은 종사자가 희망하고 시설장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제20조 (준용)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복무규정,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3년간 연장하되,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설치년월일	보 육 정 원			
			계	2세미만	2세	3세이상
삼척별나라 어린이집	남양동6-1 9동2반	'93.12. 2	131	10	21	100
도계어린이집	도계읍 도계4리 산95-3번지	'82. 4. 30	45	5	7	33

[별지 1호 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신청서

시설의 표시

명 칭		설치 연월일	
소재지		보육 정원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속 (법인명)		전화 번호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학 력		보육관련자격	
주요 경력 (주요사업)			
자산 현황			

위탁관리 신청기간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 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삼척시장	
을	주 소 (법인명)		전화 번호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		설치 연월일	
소재지		보육 정원	
<p>○○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삼척시장을 "갑" (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p>			
계약 기간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년 월)			
계약 내용 : 별첨			
<p>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p>			
19 년 월 일			
위탁자 (갑) : 삼 척 시 장 (인)			
수탁자 (을) : (인)			